

해양경찰청 고시 제 2019-6호

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관한 규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2년 00월 00일

해양경찰청장

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「연안사고예방법」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
수료 기준 및 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·취소 반영, 통합형 안전교육 수료증
추가를 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시간당 7,500원”을 “시간당 8,000원”으로 변경, 법률 인용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기관의 명칭)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기관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)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의2 별표 3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
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.

제4조(수수료 등) ①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규칙 제6조의2 별표 3에 따른 교육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8,000원 이하로 산정한다.

② 위탁기관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.

④ 위탁기관은 수수료를 징수 하였을 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검토기한) 해양경찰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별표]

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

| 연번 | 학교명 | 주 소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인천대학교 |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|
| 2 | 한경대학교 |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|
| 3 | 동남보건대학교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|
| 4 | 세한대학교 |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길 21-200 |
| 5 | 한서대학교 | 충남 태안군 남면 공성로 314 |
| 6 | 경동대학교 |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|
| 7 | 한국해양대학교 |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|
| 8 | 영산대학교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|
| 9 | 동원과학기술대학교 |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|
| 10 | 안동대학교 |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|
| 11 | 전주비전대학교 |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235 |
| 12 | 전주대학교 |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|
| 13 | 목포해양대학교 |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|
| 14 | 제주국제대학교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|
| 15 | 제주관광대학교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원 |
| 16 | 한양대학교(에리카) |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|
| 17 | 대전보건대학교 |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(가양동) |

제 00대학 - 22 - 00 호

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

통합형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주 소 :

위 사람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 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(통합형 또는 수상형 또는 수중형 또는 일반형)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0 0 0 대학교총장

□ **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**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)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<u>제6조제2항 별표 2</u>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조</u> <u>의2 별표 3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조(수수료 등) ①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<u>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</u>에 따른 교육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<u>7,500원</u> 이하로 산정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제4조(수수료 등) ① ----- ----- <u>규칙 제6의제2 별표 3</u>----- ----- <u>8,000원</u>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